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1월 7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차량 상속 후 말소등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인정기한 연장

개정안은 차량 상속 후 차령 초과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말소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의 말소등록 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제2호).

① 이는 상속 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보다 차량 상속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말소등록 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여 후자의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두 기한을 통일하여 국민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등록령」도 2024년 6월 18일 개정을 통해 상속 차량의 말소등록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연장하였다는 점,

③ 말소등록 기한을 연장하여도 상속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상속인이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2) 폐기 담배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담배를 폐기하면서 이미 납부한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받으려는 경우 이를 제조장 또는 수입담배보관장소로 다시 반입한 후 폐기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던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바로 폐기장소로 이동시켜도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2호).

현행법은 담배소비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해당 신고와

함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불량·미판매 등에 따른 폐기 담배의 담배소비세를 차년도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를 다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으로 반입한 후 세액을 공제·환급 받고 폐기장소로 이동시켜야 함.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담배를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폐기하려면 폐기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폐기 담배를 굳이 다시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폐기 여부의 확인·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② 폐기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였다 폐기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3)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사유 보완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공제를 받는데, 개정안은 ① 해당 공제기간(1년)에서 종업원수가 50명에 미달하는 달은 제외하도록 하고, ② 해당 공제요건의 자구상 문제로 최근 1년 내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5제2항).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분)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분·종업원분)에 부과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세이며, 이 중 종업원분은 과세표준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 급여 총액”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0.5%”로 하는 세목임.

현행법 제84조의5제2항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i)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며 종업원을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 및 ii) 최근 1년간 50명 이하였던 중소기업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한 후 최초 신고월부터 1년간 종업원 50명분의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① 현행법은 종업원수가 50명을 한 번만 초과하면 종업원수가 다시 감소하여도 1년간 50명분의 급여를 공제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개정안은 1년 중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공제가 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② 최근 1년 내에 종업원을 50명 이하로 고용하며 신설되었으나 사후적으로 50명을 초과하게 된 중소기업은 상기 i) 또는 ii)의 요건에 모두 포섭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안은 최근 1년 내 사업소가 신설된 중소기업으로서 종업원수가 계속 50명 이하였다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상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각각 단순한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를 쉽

게 하거나(①의 경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②의 경우), 필요한 조치로 보임.

(4)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개정안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미이행에 대한 각종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4년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분)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분·종업원분)에 부과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세이며, 이 중 사업소분은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이 다음 표와 같이 규정된 세목임.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당시 다음 표와 같이 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현행 사업소분 중 사업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분)과 ② 재산분(현해 사업소분 중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분)이 통합된 것인데,

1973년 도입 이후 부과·징수 방식으로 납부되던 전자(①)가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에 포함되면서, 기존 납세의무자(개인·법인사업자)가 선의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는 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2022년말까지 2년간 면제하는 특례를 두었고, 이후 이를 2024년말까지 2년 연장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다시 2년간 연장(총 6년간 규정)하려는 것임.

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한 내 신고·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하고, ②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독립세로 전환한 후 가산세 면제 특례를 6년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가산세 면제 특례의 기한만 계속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한 내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로 회귀하는 것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계로 회귀하려는 것임(안 제8장제2절의2 삭제 등).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체계(국세)로서,

① 주식·채권·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0~25%의 세율로 포괄적으로 과세하되, ②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분류과세)하며, ③ 기본공제 및 손실을 상계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되 5년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짐.

당초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상황인데, 2024년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둔 현재 까지도 그 시행을 둘러싼 찬반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목적을 언급하며 ① 현행 조세체계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소득 실현방식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손실 상계 및 이월을 통하여 실질적인 순수익만 과세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상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정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2020년 추정치 기준으로 과세대상자가 15만명까지 확대(세부담 +1.5조원 증가)되고 그 밖에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해외시장 등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의 대상인 지방소득세는 2010년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tax)로 신설된 후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서울도 소득세·법인세와 각각 동일한 소득구간을 설정한 후 소득구간별로 소득세·법인세 세율의 1/10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신고·납부 등 세부 사항도 가급적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 및 ② 기획재정위원회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률안 심사경과를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등

개정안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소규모법인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인상(9%→19%)하는 것에 연동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도 인상(0.9%→1.9%)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조제1항).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는 소규모 법인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같은 법상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다음 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등임.

한편, 현행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업종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4단계 누진 구조가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9% → 19%로 조정하는 「의안번호 22035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국회에 제출 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의안번호 22035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연동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1.9%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안번호 22035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 경과 등을 지켜보며,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임.

(7)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2년간 연기하는 것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를 2년간 연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 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제1조제4호 신설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의미함.

「소득세법」은 이러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할 예정이며,

그에 연동하여 「지방세법」은 가상자산소득에 지방소득세(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를 과세할 예정임.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둔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등을 이유로 과세 개시일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였고,

2022년에는 주요국 금리 인상 및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을 이유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선행하고자 과세 개시일을 2025년 1월 1일로 재차 연기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려는 「의안번호 2203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에 연동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도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동 개정안을 함께 제출한 것임.

이와 관련해서는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등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②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가간 정보 교환도 2027년 개시될 예정이므로, 관련 제도가 정립된 후 과세를 하기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추가 연기되면 총 3차례에 걸쳐 5년이 연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 행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②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찬반입장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안번호 2203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 경과 등을 지켜보며, 개정안의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 명확화

개정안은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시 과세기준일을 현행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에서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현행법상 자동차세 소유분의 징수방법은 ① 6월 1일(제1기분) 및 12월 1일(제2기분)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각각 같은 달에 부과·징수하는 정기납부와 ②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시부과로 구분

됨.

이 중 자동차 신규등록·말소등록에 따른 수시부과의 과세기준일은 현행법상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① 현행법 제128조제2항제1호상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의 요건이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과세기준일로 “신규등록”, “말소등록”이 아닌 “취득”, “사용 폐지” 등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② 특히 “취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신규)등록을 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어 취득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응익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에 대한 과세는 납세의무 성립(신규등록·말소등록 등) → 부과 → 징수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용 기준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9)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의 일몰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종 지방세 세목에 연동하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형태의 특별시·광역시·도세임.

이 중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1996년 지방세분 교육세로 신설되어 2000년말까지 담배소비세액의 40%로 부과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2001년 지방세분 교육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고 세율이 50%로 인상되면서 일몰기한이 2003년말까지 3년 연장되었고, 다시 일몰기한이 2005년말까지 2년, 2010년말까지 5년, 2015년말까지 5년 연장되었음. 또한 2016년에는 세율이 43.99%로 인하되며 일몰기한이 2018년말까지 3년 연장되었고, 다시 일몰기한이 2021년말까지 3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개정안은 상기 일몰기한을 다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인데, 당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청과 시·도 등 간에 다음과 같은 찬반 입장이 대립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시·도교육청 등은 일몰기한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① 최근 국세

수입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예산 대비 2023년 10.4조원, 2024년 4.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②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국가, 시·도 및 시·군·구의 비용 분담 규정이 2024년말 기준 일몰되어 매년 약 1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 후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7년 이후 일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반면, 시·도 등은 일몰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① 학령인구 감소는 2027년이 아니라 이미 2000년대 후반 본격화되어 2024년 학령인구(524.8만명)가 2005년 792.3만명 대비 33.8%,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분이 신설된 1996년 862.4만명 대비 39.1% 각각 감소되어 있고,

② 1996년 이후 29년간 이미 일몰기한이 7차례 연장되며 관성화되어 일몰기한을 설정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원칙대로 2024년말 일몰기한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고로, 정부는 관계 부처간 이견을 절충하여 해당 일몰기한을 2026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며,

그 밖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의안번호 2204046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도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가 필요하겠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